

제 호

허 가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위치 또는 장소 :

허가내용 :

기 간 : 20 . .부터 20 . .까지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·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조사·측량 등을 하도록 위 사람에게 토지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

20

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
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직인